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10

발의연월일: 2020. 7. 21.

발 의 자:최혜영·고영인·박성준

김민철 · 신동근 · 전혜숙

인재근 • 이광재 • 이상헌

정청래 • 우원식 • 이탄희

이 워택 • 유재갑 • 이수진(비)

박영순 · 김경만 · 오영환

의원(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서로에 대하여 동행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함.

그러나 동행 요청 자체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최초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서로에게 동행을 요청하지 않아 해당 사건에 대한 대응이 지체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최초 신고 시에 즉시 유기적으로 대처하여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 무원은 서로에 대하여 반드시 동행을 요청하도록 하여, 아동학대범죄 에 대한 신속하고 유기적인 대응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법률 제 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후단 중 "요청할 수 있으며"를 "요청하여야 하며"로 한 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현장출동) ① 아동학대범	제11조(현장출동) ①
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	
리나 「아동복지법」 제22조제	
4항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공무	
원(이하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이라 한다)은 지체 없이 아동	
학대범죄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사기관의 장이	
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은 서로 동행하여 줄 것	
을 <u>요청할 수 있으며</u> , 그 요청	<u>요청하여야 하며</u>
을 받은 수사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사	
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	
무원이 아동학대범죄 현장에	
동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